2016년도 果川市 일반 및 특별회계

決 算 檢 査 意 見 書

수신 : 과천시장

2016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7. 4. 24. ~ 5. 13.(20일)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윤미현(과천시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 노영기(공인회계사)
- 검 사 위 원 : 박정현(세무사)

果川市決算檢査委員

목 차

1 검사의견서 1

2 결산검사 총괄 현황 2

1. 과천시 재정 현황과 추이 2

2. 세입·세출 결산 3

3. 재무제표의 결산 14

4. 성과보고서 16

5.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8

3 개선 및 권고사항 21

4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26

1 결산검사 의견서

과 천 시 장 귀 하

2017년 5월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과천시 의회로부터 과천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17년 4월 24일부터 2017년 5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6회계연도 과천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과천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과천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윤미현 (인)

검사위원 노영기 (인)

검사위원 박정현 (인)

2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과천시 재정 현황과 추이

최근 3년간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계	세 입 (수 입)	443,550	530,268	473,657
	세 출 (지 출)	251,398	302,730	238,061
	결 산 상 잉 여 금	192,152	227,537	235,596
일 반 회 계	세 입	231,779	287,874	288,035
	세 출	179,004	225,245	220,504
	결 산 상 잉 여 금	52,775	62,629	67,531
특 별 회 계	세 입	73,753	75,977	24,062
	세 출	12,372	66,916	13,839
	결 산 상 잉 여 금	61,381	9,060	10,223
기 금	세 입	138,018	166,417	161,560
	세 출	60,022	10,569	3,718
	결 산 상 잉 여 금	77,996	155,848	157,842

기금을 포함한 19개 전체 회계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과천시 재정규모는 473,657백만원으로 2015년 대비 56,61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규모'는 3,457천원, 지방세 실제수납액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세부담액'은 1,133천원 임.

결산상 잉여금 235,596만원은 일반회계의 결산잉여금 67,531백만원, 특별회계 결산잉여금 10,223백만원, 기금의 결산잉여금 157,842백만원의 합계액 임.

일반회계의 결산잉여금 내역은, 이월금 18,363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37백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47,380백만원 임.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차인잔액 (C=A-B)
합 계	301,334	312,097	234,343	77,754
일 반 회 계	281,359	288,035	220,504	67,531
특 별 회 계	19,975	24,062	13,839	10,223
공기업특별회계	16,720	19,496	11,522	7,974
상 수 도	7,989	9,284	7,070	2,214
하 수 도	5,394	6,875	3,967	2,908
지식정보타운	3,337	3,337	485	2,852
기타특별회계	3,254	4,566	2,317	2,249
저 소 득	521	540	114	426
의 료 보 호	353	384	350	34
도시주차장	2,380	3,643	1,853	1,789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 월 액 (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합 계	-	10,438	1,589	7,010	1,337	57,380
일 반 회 계	-	9,858	1,495	7,010	1,337	47,831
특 별 회 계	-	580	94	-	-	9,549
공기업특별회계	-	580	94	-	-	7,300
상 수 도	-	-	72	-	-	2,142
하 수 도	-	580	15	-	-	2,313
지식정보타운	-	-	7	-	-	2,845
기타특별회계	-	-	-	-	-	2,249
저 소 득	-	-	-	-	-	426
의 료 보 호	-	-	-	-	-	34
도시주차장	-	-	-	-	-	1,789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2,09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01,334백만원 보다 10,763백만원이 추가 수납되었음.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5%인 234,343백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77,754백만원임.

이중 명시이월비 10,438백만원, 사고이월비 1,589백만원 및 계속비 7,010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337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380백만원임.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281,359	297,329	288,035	1,094	8,200
결산확인액	281,359	297,329	288,035	1,094	8,200
차 액	-	-	-	-	-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은 288,035백만원이며 예산액의 102.4%로서 6,676백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288,034,997,658	288,034,997,658	-

금고출납계산서와 수납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예 산 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0 1 6	281,359	297,329	288,035	1,094	8,200
2 0 1 5	266,133	298,707	287,874	2,346	8,487
증 감	15,226	△1,378	161	△1,252	△287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2015년 대비 0.5%가 증가한 96.87%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287,874백만원보다 161백만원이 많은 288,035백만원이 수납되었음.

불납결손액의 경우 전년도 2,346백만원보다 1,252백만원이 감소한 1,094백만원으로 주된 결손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321백만원, 행방불명 28백만원, 시효소멸 91백만원, 압류재산 경·공매로 인한 배당금액부족분 654백만원 임.

과목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예 산 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281,359	297,329	288,035	1,094	8,200
지 방 세	65,945	78,362	72,248	917	5,197
세 외 수 입	25,741	30,584	27,404	177	3,003
지 방 교 부 세	3,828	4,739	4,739	-	-
조정교부금 및 재 정 교 부 금	91,329	89,275	89,275	-	-
보 조 금	31,887	31,740	31,740	-	-
보존수입등 및 내 부 거 래	62,629	62,629	62,629	-	-

과목별로 세입결산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25%인 72,248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9.5%인 27,404백만원이 수납되었음.

지방교부세는 1.6%인 4,739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31%인 89,275백만원, 보조금은 11%인 31,740백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분석되는 바 이전수입의 재정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결 산 액	260,060	281,359	220,504	18,363	42,492
결산확인액	260,060	281,359	220,504	18,363	42,492
차 액	-	-	-	-	-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260,060백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21,299백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81,359백만원 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4%인 220,504백만원 임.

이월액은 18,363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의 경우 공원시설물 보강(시설비) 등 26건 9,858백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도로기반시설정비(시설비) 등 7건 1,495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은 지방하천 개수사업(시설비) 등 3건 7,010백만원 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5.1%인 42,492백만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산집행잔액 41,155백만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1,337백만원 등 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220,504,061,614	220,504,061,614	-

금고출납계산서와 지출액은 일치함.

○ 이용·전용 및 이체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는 해당내역 없으며, 전용액은 148백만원으로 조직내 부문별 세부사업 전용으로 총 22건 발생하였고, 사유는 “조직활성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포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 등 임.

이체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주민생활지원실과 총무과 간 548백만원이 이체되었음.

○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지출

인건비 지출액은 34,421백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지출액은 19,115백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용은 99,852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에 45,514백만원,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16,343백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 등에 4,257백만원이 집행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67,531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월사업비 18,363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3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7,831백만원으로 결산 됨.

순세계잉여금 47,831백만원은 세입초과금 6,676백만원과 집행잔액 41,155백만원의 합 임.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비율	집행율	금액	비율
합 계	225,245	281,359	220,504	100%	78.4	△4,741	97.9
일반공공행정	46,092	51,760	48,927	22.2%	94.5	2,835	106.2
공공질서및안전	1,243	1,655	1,448	0.7%	87.4	205	116.6
교 육	5,081	6,193	5,924	2.7%	95.6	843	116.6
문화및관광	9,288	15,305	10,983	5.0%	71.8	1,695	118.3
환 경 보 호	11,242	12,635	11,702	5.3%	92.6	460	104.1
사 회 복 지	47,295	51,866	49,031	22.2%	94.5	1,736	103.7
보 건	2,799	3,398	3,043	1.4%	89.5	244	108.7
농림해양수산	3,177	4,514	4,202	1.9%	93.1	1,025	132.3
산업.중소기업	1,475	1,307	1,104	0.5%	84.4	△371	74.8
수 송 및 교 통	47,767	27,645	22,076	10.0%	79.9	△25,691	46.2
국토및지역개발	9,699	31,945	20,103	9.1%	62.9	10,404	207.3
예 비 비	-	29,874	-	-	-	-	-
기 타	40,087	43,255	41,961	19.0%	140.5	1,874	104.7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결산에서 전체 지출액 중 지출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49,031백만원(22.2%), 일반공공행정 48,927백만원(22.2%) 등 이며, 전년대비 증가폭이 큰 부문은 국토 및 지역개발로 20,103백만원(207.3%)이며 감소율이 두드러진 분야는 수송 및 교통(46.2%)분야 임.

(3) 특별회계(직영 공기업 포함)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9,975	26,300	24,062	1	2,237
공기업특별회계		16,720	19,526	19,496	-	30
	상 수 도	7,989	9,304	9,284	-	20
	하 수 도	5,394	6,885	6,875	-	10
	지식정보타운	3,337	3,337	3,337	-	-
기타특별회계		3,254	6,774	4,566	1	2,207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521	703	540	-	163
	의료급여기금	353	384	384	-	-
	도시주차장	2,380	5,687	3,643	1	2,044
결 산 확 인 액		19,975	26,300	24,062	1	2,237
차 액		-	-	-	-	-

○ 세입결산 개요

특별회계 결산 수납액 24,062백만원은 예산액 대비 4,087백만원(120.5%)이 초과 수납되었음. 세부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과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초과 수납되었고 도시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요금 수입이 초과 수납되었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구 분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합 계	24,062,341,407	24,062,341,407	-
공기업특별회계	19,495,811,436	19,495,811,436	-
기타특별회계	4,566,529,971	4,566,529,971	-

특별회계 수납액과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은 일치함.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8,942	19,975	13,839	674	5,462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5,688	16,720	11,522	674	4,524
상 수 도	7,167	7,989	7,070	72	847
하 수 도	5,191	5,394	3,967	595	832
지 식 정 보 타 운	3,330	3,337	485	7	2,845
기 타 특 별 회 계	3,254	3,254	2,317	-	938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521	521	114	-	407
의 료 급 여 기 금	53	353	350	-	3
도 시 주 차 장	2,380	2,380	1,853	-	527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 18,942백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033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9,975백만원이고 지출은 예산현액의 69.3%인 13,83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674백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5,462백만원임.

○ 주요 회계별 세출 현황

-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특별회계 경우 이월사업비 7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33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85백만원, 불용액은 2,845백만원이 발생함.
  불용액의 주요 원인은 향후 본격적인 분양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 2,806백만원 임.

-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경우 예산현액은 521백만원, 지출액은 114백만원, 불용액은 408백만원이 발생함.
  불용액의 주요원인은 융자금 18백만원, 예비비 385백만원 임.

-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경우 예산현액은 2,380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853백만원으로 불용액은 527백만원이 발생함.
  불용액의 주요 원인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8백만원, 불법주정차단속 및 홍보 일반운영비 52백만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장비유지비 42백만원, 예비비 255백만원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구 분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합 계	13,838,766,010	13,838,766,010	-
공기업특별회계	11,521,724,440	11,521,724,440	-
기타특별회계	2,317,041,570	2,317,041,570	-

특별회계 세출결산상 지출액과 금고 출납계산서와의 차액은 없음.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비는 다음과 같음.

일반회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결산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합 계			**9,857**	**1,495**	**7,010**
기획감사실	시정기획 및 조정	연구용역비	97	-	-
기획감사실	정부합동평가 추진(도비)	포상금	20	-	-
주민생활지원실	따복공동체 주민 공모사업(도비)	행사운영비	25	-	-
주민생활지원실	따복공동체 주민 공모사업(도비)	행사실비보상금	3	-	-
안전총괄담당관	하천개보수	시설비	761	-	-
안전총괄담당관	지방하천 개수사업(도비)	시설비	-	-	2,528
안전총괄담당관	소하천 정비사업(지특)	시설비	-	-	322
안전총괄담당관	소방용수시설 확충(도비)	시설비	-	51	-
도시사업단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시설비	-	10	-
도시사업단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	-	4,160
도시정책과	도시정비(도비)	연구용역비	238	-	-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정비	연구용역비	-	315	-
건설과	유도구역 정비	시설비	152	-	-
건설과	도로시설물 정비	시설비	804	137	-
건설과	미불용지 관리	사무관리비	17	-	-
건설과	미불용지 관리	시설비	600	-	-
건설과	주암2교 내진보강사업(국비)	시설비	650	-	-
건설과	근린공원(갈현지구)조성	시설비	141	-	-
건설과	기반시설(도로) 정비	시설비	-	702	-
교통과	대중교통운행지원	연구용역비	74	-	-

예 산 과 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교통과	지능형교통운영(도비)	시설비	700	-	-
교통과	주차장 확충	시설비	371	-	-
문화체육과	전통사찰보전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1,560	-	-
문화체육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도비)	시설비	25	-	-
문화체육과	관광객유치사업	시설비	150	69	-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정비	시설비	295	211	-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30	-	-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조성(도비)	시설비	1,000	-	-
산업경제과	공원시설물 보강	시설비	2,000	-	-
산업경제과	공원시설물 보강	감리비	7	-	-
산업경제과	산림보호유지운영	시설비	110	-	-
총무과	행정정보관리	공공운영비	8	-	-
보건소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국비)	의료및구료비	19	-	-

특별회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결산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합 계			**580**	**94**	-
맑은물사업소	결 산 감 사 수 수 료	사무관리비	-	9	-
맑은물사업소	비 상 용 급 수 차 제 조 구 매	자산취득비	-	63	-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지하화 기본구상용역	시 설 비	80	-	-
환경사업소	중 앙 지 구 우 수 관 로 개 선 공 사	시 설 비	500	-	-
환경사업소	죽바위지구하수관로기본계획및실시설계	시 설 비	-	15	-
도시사업단	결 산 감 사 수 수 료	사무관리비	-	7	-

3. 재무제표의 결산

2016회계연도 과천시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6	2015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811,862	1,813,822	(1,960)	(0.1)
Ⅰ. 유 동 자 산	226,402	207,177	19,225	9.3
Ⅱ. 투 자 자 산	5,156	4,121	1,035	25.1
Ⅲ. 일 반 유 형 자 산	164,977	168,616	(3,639)	(2.1)
Ⅳ. 주 민 편 의 시 설	545,431	551,162	(5,731)	(1.0)
Ⅴ. 사 회 기 반 시 설	865,036	878,402	(13,366)	(1.5)
Ⅵ 기 타 비 유 동 자 산	4,860	4,343	517	11.9
부 채	8,694	10,673	(1,979)	(18.5)
Ⅰ. 유 동 부 채	2,940	5,128	(2,188)	(42.6)
Ⅱ. 장 기 차 입 부 채	-	-	-	-
Ⅲ. 기 타 비 유 동 부 채	5,754	5,545	209	3.7
순 자 산	1,803,168	1,803,149	19	-
Ⅰ. 고 정 순 자 산	1,576,383	1,597,115	(20,732)	(1.3)
Ⅱ. 특 정 순 자 산	84,714	82,550	2,164	2.6
Ⅲ. 일 반 순 자 산	142,071	123,483	18,588	15.0

2016회계연도 말 과천시의 자산은 1조 8,118억 원으로 전년도의 1조 8,138억 원보다 20억 원(0.1%)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2016회계연도 말 과천시의 부채는 86억 원으로 전년도의 106억 원보다 20억 원(18.5%)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미지급금의 감소로 인해 유동부채가 21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6	2015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가 - 나)	129,067	87,092	41,975	48.11
가. 사업총원가	148,577	144,027	4,550	3.1
나. 사업수익	19,510	56,935	(37,425)	(65.7)
Ⅱ. 관리운영비	45,714	38,388	7,326	19.0
Ⅲ. 비배분비용	13,537	10,883	2,654	24.3
Ⅳ. 비배분수익	10,546	15,446	(4,900)	(31.7)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 + Ⅱ + Ⅲ - Ⅳ)	177,771	120,916	56,855	47.0
Ⅵ. 일반수익	208,643	168,427	40,216	23.8
Ⅶ. 재정운영결과 (Ⅴ - Ⅵ)	(30,871)	(47,511)	16,640	(35.0)

과천시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1,485억 원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95억 원을 차감한 1,290억 원이며, 총 92개의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시정지원'(88억 원)과 '청소관리'(16억 원)이다.

또한, 2016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47억 원과 운영비 1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20억 원, 기타비용 115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69억 원, 기타수익 36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회계연도 과천시의 재정운영결과는 (-)308억 원으로 전년도의 (-)475억 원보다 166억 원(35%) 감소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비와 사업순원가 비배분비용이 각각 74억 원, 419억 원, 26억 원 증가하였으나, 비배분수익이 각 49억 원 감소하는 등 재정운영 순원가가 568억 원(65.2%) 증가하였고 일반수익이 402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4. 성과보고서

과천시에서는「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과천시는 본 회계연도의 '활기찬 과천 신나는 시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21개) - 정책사업목표(46개) - 단위사업(12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4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7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
계	21	46	78	58	20	74
의회사무과	1	1	2	1	1	50
기획감사실	1	1	3	2	1	67
주민생활지원실	1	3	5	5	0	100
안전총괄담당관	1	2	5	3	2	60
도시사업단	1	1	0	0	0	0
도시정책과	1	2	2	2	0	100
건설과	1	1	3	3	0	100
건축과	1	2	3	1	2	33
교통과	1	1	3	2	1	67
열린민원과	1	2	3	3	0	100
사회복지과	1	5	8	7	1	88
교육청소년과	1	2	5	4	1	80
문화체육과	1	5	5	5	0	100
환경위생과	1	5	6	2	4	33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
산업경제과	1	5	6	5	1	83
정보통신과	1	1	3	2	1	67
세무과	1	1	3	2	1	67
회계과	1	2	6	4	2	67
총무과	1	2	4	4	0	100
보건소	1	1	1	0	1	0
정보과학도서관	1	1	2	1	1	50

과천시의 2016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실 등 6개 기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건축과와 환경위생과는 33%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문화강좌 및 체육관 프로그램 수강생 증가율 지표' 및 '정보과학도서관 이용자 증가율 지표'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이주를 고려하지 않은 목표치 설정으로 인하여 목표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가 나온 사례가 확인되었다.

5.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3,653	209	106	3,756
일 반 회 계	3,369	60,272	250	3,429
특 별 회 계	284	149	106	327
공 기 업 특 별 회 계	-	-	-	-
상 수 도	-	-	-	-
하 수 도	-	-	-	-
지 식 정 보 타 운	-	-	-	-
기 타 특 별 회 계	284	149	106	327
저 소 득	284	149	106	327
의 료 보 호	-	-	-	-
도 시 주 차 장	-	-	-	-
기 금	-	-	-	-
통 합 관 리 기 금	-	-	-	-
공 공 부 조 기 금	-	-	-	-
재 난 관 리 기 금	-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	-	-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	-	-	-
지 역 발 전 기 금	-	-	-	-
사 회 복 지 기 금	-	-	-	-
양 성 평 등 기 금	-	-	-	-
교 육 발 전 기 금	-	-	-	-
과 천 축 제 육 성 기 금	-	-	-	-
체 육 진 흥 기 금	-	-	-	-
식 품 진 흥 기 금	-	-	-	-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56백만원으로, 각각 일반회계 3,429백만원, 특별회계 327백만원 임.

(2) 채무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계	80,888	1,587	3,382	1,795	82,474
통합관리기금	74,961	407	2,330	1,923	75,368
공공부조기금	3,158	△8	82	90	3,149
재난관리기금	1,675	329	622	293	2,004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3,128	754	754	-	3,882
옥외광고정비기금	67	33	53	19	100
지역발전기금	15,961	407	407	-	16,368
사회복지기금	11,112	△91	285	376	11,021
양성평등기금	3,108	15	79	64	3,123
교육발전기금	25,337	173	648	476	25,510
과천축제육성기금	15,128	10	385	375	15,138
체육진흥기금	2,171	△18	54	72	2,153
식품진흥기금	43	△17	13	30	26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결산에 포함된 금액으로 합계 미포함.

2016년도 말 기금 현황은 통합관리기금 1개, 법정관리기금 4개, 통합관리기금예탁기금 7개로 총 12개가 운영되었음. 이들 기금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82,474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587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이 주요 수입원임. 본년도 기금 지출액은 1,795백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음.

(4)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226,860	38,827	15,625	1,250,062
행정자산	소 계	1,218,315	38,035	13,606	1,242,744
	공 용 재 산	182,282	2,570	1,464	183,388
	공 공 용 재 산	996,432	35,464	12,141	1,019,755
	기 업 용 재 산	39,395	-	-	39,395
	보 존 재 산	206	-	-	206
일 반 재 산		8,545	792	2,019	7,318

검사결과,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23,202백만원이 증가한 1,250,062백만원 임. 주요 증가 내역은 GB해제지역 내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토지매입 및 직장 어린이집 신축 등이며, 감소내용은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및 과천예원 처분 등임.

(5) 물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수 량	666	19	18	666
금 액	8,207	444	351	8,300

검사결과, 물품 결산액은 신규취득 444백만원과 매각·폐기 35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3백만원 증가한 8,300백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으로 확인됨.

3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금 과오납반환액 구분 관리

현행 과오납반환액의 경우 착오부과, 이중납부, 기타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로 인한 사유가 전체 과오납액의 97.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구분의 실효성이 없으며 기타의 중요한 부분(국세경정에 의한 부분 등)을 별도로 구분한다면 관리목적상 구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시스템 상에서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스템 개정을 요청하여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 사업비예산책정의 체계화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는 대부분 경상적인 비용이며 지출내역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도 2차 추경의 금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이가 815백만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지원예산액 전체를 비교하여도 집행잔액 1,044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을 편성 시 좀 더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편성하여 집행 잔액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3. 장애인 복지관 운영의 건

장애인복지관은 도비 70백만원 시비 2,110백만원의 예산으로 도 예산비율이 3.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기도내 모든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하는 도비는 복지관 1개소 당 70백만원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인근 3개시(안양, 의왕, 성남)와 비교하면 과천시의 인구(총인구수, 장애인구수)에 비하여 과도한 시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실례로 의왕시의 경우 인구는 과천시의 2.5배 장애인 인구로는 3배이나 예산은 과천시(21.8억)가 의왕시(15.9억)보다 37%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은 장애인 복지법 등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지방이양사업으로 실질적인 비용은 시, 군에서 집행함에도 국고예산은 지원되지 않으며 경기도에서도 생색내는 정도의 예산만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는 점진적인 축소가 불가피

하며 지식정보타운 준공 이후에도 현 수준이내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 인구 예측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계획 및 예산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보육사업 예산에 관한 건

아동 및 보육예산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까지 보통교부세 불교부 자치단체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비의 10%만을 교부받았으며 나머지 예산은 전액 시예산으로 지원하였는데 2017년에는 교부단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30%를 보조받아야 하나 교부통지가 예산반영 시점이후(2016년 12월 30일 통지)에 이루어졌으므로 2017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금액은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지원사업, 누리과정차액보육료,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 많은 부분에서 발생(확인금액만 627,265천원)하고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보조비율 상향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5. 직장 운동 경기부(육상부)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건

과천시는 1986년도 시 승격 당시에 직장운동경기부로 육상부를 창단(현원:10명)하여 매년 1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엘리트 체육인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우수 스포츠 인재를 통한 국가 스포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별로 직장 운동 경기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과거의 엘리트스포츠 육성 접근방식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직장 운동 경기부가 시대여건과 환경변화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지역 스포츠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며 아울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6. 「과천축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도출을 위한 대규모 주민참여 워크숍 진행용역」에 관한 건

「과천축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시민참여 워크숍 진행용역」은 사업비 21,340천원, 기간 2016. 9. 22.~11. 25.(64일)으로 ㈜쿠퍼실리테이션과 계약된 것입니다.

용역비 집행시 지출관련 서류 등 정산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착수보고서 상 계약명, 성과보고서 등 계약명이 동일하지 않으며, 애초 목표인원 100명임에도 불구하고 2016. 11. 5.(토) 참여인원 56명 5시간 원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용역기간도 9. 22.~12. 5.(74일) 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거리예술축제를 진행하는 안산의 예를 들자면 경기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 예산으로 안산 거리예술축제 30년을 목표로 4일간(3일간 심포지엄, 1일 클로징 파티) 국내외 유명 축제 감독(숙박과 항공비, 연사비 포함)과 예술인, 시민 700여명이 참석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행정력과 예산의 효율성이 지극히 비교됩니다.

축제의 방향성을 놓고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 상황 속에서 용역의 방향과 비용, 기간 대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향후 이러한 용역 진행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7. 시승격 30주년 기념예술행사 〈뮤지컬 갈라 콘서트-비상〉

시승격 30주년 기념예술행사는 3억원 본예산이 행사시기의 중복성과 과천시 5개 재건축 동시 추진으로 인한 민심의 피폐 이유로 삭감되었었으나 추경 1억 5천만원 승인으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당초 시민회관 옆 잔디마당 가수초청 무료 공연에서 뮤지컬 갈라 콘서트 유료공연으로 변경하고, 본예산의 절반예산으로 국내 뮤지컬 전문 기획사 자문으로 예산 절감 2회, 공연 관람객 1,858명 만석,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뮤지컬의 하이라이트를 국내 최정상의 팝페라 & 뮤지컬배우들과 과천시립교향악단의 협연을 통해서 최상의 공연을 펼쳐 시민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술 공연 관람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유료공연(과천시민 5,000원, 일반인 20,000원)으로 추진 한 점 또한 바람직한 사례입니다.

8. 2016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과천시 홍보관 운영

예산 42,000천원으로 2016. 4. 15.~4. 17.(3일간) 참여하였으며, 1일 평균 550명 부스 방문 체험으로 총 1,600여명 참여하였습니다. 최우수 홍보상 수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관내 주요관광 기관인 국립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대공원, 렛츠 런 파크, 서울 랜드 등 주요관광지와 협력하여 부스를 운영하고 기관별 입장권 협조를

통해서 효율성을 더 높여주시기 바라며, 이벤트 운영 시 제공한 기념품인 친환경 메모지, 머그컵, 추사부채, 추사 스카프 외에도 과천을 대표할 만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9. 유도구역(굴다리 시장) 환경 정비

유도구역(굴다리시장) 환경정비 사업은 당초 예산액이 179,000천원이었으나, 전기시설 관리 및 노점상 정비 사업에서 총3회 62,000천원의 예산전용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구역의 성격상 시 행정 방침을 불법 노점상 자연소멸로 했었으나 도보확보, 위생문제, 미관상 문제로 정비하게 된 배경이 있으며, 예산 심의 과정과 4 · 5단지 주민들과의 갈등 등 여러 어려움 가운데 세워진 예산임을 감안할 때 62,000천원 예산전용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부담스러운 증액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전용이 아닌 정확한 정책적 판단과 현장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적으로 집행이 필요합니다.

10. 의회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의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시공사 ㈜양지건설과 248,816천원에 계약 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 발생으로 추후 260,752천원으로 계약 변경되었습니다. 설계 변경사유는 컨테이너 가설사무소 신규 추가, 통행자 안전 확보 및 우수 유입차단을 위한 샌드위치 패널 설치 추가, 전실 내부 벽 유리·창틀 부분을 MDF 판넬·인테리어 필름 변경 설치 등이었으며, 이러한 사유는 시공 경험이 다수였을 경우 당초 공사 내역서에 반영되었을 사안들로 설계변경이 불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공일 또한 2016. 9. 10.에서 2016. 11. 14.로 변경되었으며, 그 사유는 관급자재 알루미늄 창호틀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이었습니다. 준공 이후 엘리베이터 기계 부분에 대하여 3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나, 현재 고장이 잦은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조달청 등록 중소기업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으나, 너무나 열악한 중소업체이다 보니 시설에 잦은 하자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공 시 경험과 하자보수에 문제가 없는 업체를 선정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11. 통합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오류

당해년도 재정상태표의 자산 중 주민편의시설 '박물관및미술관'에 9,47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추사박물관 토지만 회계처리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 건물, 비품, 차량운반구 등 또한 '박물관및미술관'으로 표기하여야 하나 현 재정상태표에는 '문화및관광시설'과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누계액'으로 표시되어 있어 계정 분류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계정을 재분류하여야 합니다.

12. 도시주차장특별회계 미회수채권에 대한 관리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다음년도 이월액이 납세태만을 이유로 이월되었으며 당년도 및 이월액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회계의 특성상 당년도발생액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진행되나 지난연도 이월액은 연도별로 회수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 회수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 채권으로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에서는 차량의 매각 및 폐차 시 회수되므로 회수는 가능하다고 하나 실제로 지난연도 수입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760백만원에 이르므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채권연령분석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면 직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채권의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뿐 아니라 채권의 회수상태에 대해서도 분석하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이월결손금 과대 계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상태표 상 표기된 자본잉여금 중 국고보조금 5,200천원은 약품비 보조(조류대응 정수비)로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보조금은 자본잉여금이 아닌 수익적 수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당기수익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항목이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이월결손금이 5,200천원 과대계상 되어있습니다.

4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1. 지방 언론사에 대한 과도한 지출

과천시는 지방 언론사에 시청 각 부서에서 구독하는 기본 구독료 외에 다음과 같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공동 주최 체육대회의 지원, 구체적 홍보 내용이 없는 광고비 지출은 폐지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한 인쇄 제작 용역은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합니다.

(1) 지방 언론사와 공동 주최 체육대회

과천시는 매년 배드민턴대회(경인일보), 마라톤대회(경기일보), 농구대회(경기일보), 탁구대회(경기신문), 승마대회(중부일보)를 각각의 지방 언론사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연간 3.6억원의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모든 진행요원, 장소, 비용의 지원은 과천시가 부담하며, 각 언론사가 부담하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 상에는 각 지방 언론사가 자부담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해당 언론사에서 해당 대회와 관련한 광고를 게재하는 비용을 산출한 것이며 이는 과천시가 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과천시 체육회의 인원이 동원되고 체육관 등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비용으로 집계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해당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는 비용으로 해당 언론사에 연간 6천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문화체육과)

- 언론사 공동 주최 체육대회는 전국단위 체육대회로 홍보가 중요한 만큼 홍보에 대한 부담은 언론사가 맡고 있고 이는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언론사의 부담률을 늘릴 수 있도록 체육회를 통하여 협의하여 일부 대회의 경우 언론사 부담금 비율이 늘어났으며,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 구체적 홍보내용이 없는 시정홍보비 등 1.7억원

과천시는 관내 주민(통반장)에게 지방지를 구입하여주는 주민홍보용 신문 구입비로 연간 45백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송구영신', '근하신년'과 같은 구체적 홍보내용이 없는 인터넷 배너나 영상 광고, 지면 광고 비용으로 연간 1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보와 연감 구입비로 26백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기획감사실)

- 직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여 시정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간행물을 구입하여 실과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차원이라기보다는 사회의 흐름, 변화, 다양한 정보, 지식의 습득차원에서 구독하는 것입니다.
- 시정 주요 시책을 언론사에 홍보자료로 제공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시에서는 주요 시책 추진사항을 구독자인 통반장이 신속하게 접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지역신문이 열악한 경영 여건 등으로 인하여 그 역할과 기능,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고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행사관련 홍보와 더불어 송구영신 근하신년과 같은 이미지 홍보도 필요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께 인사를 건네고, 시의 새로운 다짐을 담아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목표를 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구 및 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3) 인쇄비 등 용역 계약비용

과천시 홍보책자 제작, 업무수첩 제작, 통계연보 제작, 생활안내 책자 제작 등 단순한 인쇄 용역을 지방 언론사에 의뢰하고 있으며 연간 44백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회계과)

- 안전달력, 시정설계, 추사박물관 해설집 등 기타 단순 인쇄 용역은 관내 업체를 통해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민간보조금 지원 제도의 문제점

지난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민간보조금은 공모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질적인 공모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의 집행 정산 관리와 성과 평가도 미흡합니다.

(1) 민간보조금 공모제의 실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4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이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않고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모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공모제로 시행된 사업은 단 4건 65백만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2%에 불과하고 98%의 보조사업에 공모 제외를 적용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공모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향후 공모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오랜 기간 특정 단체에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선해나가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공모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조금 공모절차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며, 아래의 민간보조금 지원에 대한 세부 원칙을 확립하여, 모든 민간단체가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기준에 의해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기획감사실)

- 2015년 지방보조금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시행되는 공모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2016년에는 19개사업에 705백만원의 보조사업을 공모로 적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공모사업을 증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모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7년 공모는 사업별 공모방식을 포괄보조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고 2017년 1월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금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사업과 신규단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앞으로 다양한 사업이 공모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발굴, 적정한 시기의 시민설명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민간단체가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민간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준 확립해야

① 운영비 교부 단체 대한 지원 기준 확립 필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2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운영비 지원을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법령에 근거가 있는 단체에 의무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운영비 보조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단체의 연간 사업 계획과 활동성과를 평가하여 운영비 보조나 공간 무상임대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뚜렷한 공적 활동의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단체에 관행적으로 예산과 공간을 지원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기획감사실)**

- 단체의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운영비는 매년 동결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 운영비 예산편성 요구 시 전년도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② 자부담 비율에 대한 기준 설정 필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1항에는 지방보조금은 사업의 성격과 단체의 비용부담능력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천시는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단체에 자부담 비율을 10 ~ 20% 의무적으로 적용하는가 하면, 관행적으로 보조금이 매년 지원되는 단체(문화원, 경기소리전수관, 예총 산하단체,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의 일부 사업은 자부담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등)나 자제 수입원이 있는 단체(새마을회)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요구하고 상근 사무실이나 근무인원이 없고 자체 수입원이 없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등 단체의 재정 상황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차차 높여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는 장애인단체와 고령자가 대부분인 보훈단체는 소속 회원들이 근로 및 비용부담 능력이 현저히 낮은 특성으로, 두 단체에 일정비율 자부담 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 문화원 및 경기소리전수관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부담이 없거나 낮은 사업이 일부 있으나,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총산하단체는 단체 사정에 따라 10%이상 자부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문화체육과)

- 바르게살기운동과천시협의회는 최근 4~5개 보조사업 추진 시 평균 25.4%, 22.4%의 자부담을 하였습니다.
- 과천시새마을회는 자체 수입원을 고려하여 최근 7~8개 보조사업 추진 시 평균 34.3%(2016년), 36.3%(2017년)의 자부담을 하였습니다.
- 2016년 민주평통 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사업비 대비 13%로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자부담 비율을 18%로 높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보조사업 지원시 단체의 재정 상황 및 사업 성격에 따라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점차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

③ 시혜성 경비 억제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식대/시상비/증정품/피복비 등 시혜성 경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집행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시혜성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며, 이는 모든 민간단체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주평통의 청소년안보현장 견학 사업의 경우, 보조금 200만원 중 45%인 90만원을 상품권 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4대사회악 척결운동의 경우, 보조금 260만원 중 식대 123만원과 증정품 1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85%가 시혜성 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 자유총연맹 역시 어머니포순이봉사단의 경우 보조금 142만원 중 식대가 78만원으로 55%에 해당합니다.
- 과천문화원의 시민의날 기념행사의 경우도 보조금 천만원 중 상금 352만원, 식대 122만원으로 47%에 해당합니다.

- 체육회의 행사사업보조의 경우는 대부분 이러한 시혜성 경비가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체육대회 90%, 도지사기체육대회 76%, 경기도생활체육축전 78%으로 매우 높으며, 과천시장배 대회 45%와 시민의날 체육대회 46%는 과천 관내에서 열리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총무과,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 2016년 청소년안보현장사업의 경우 기념품 등 시혜성 경비를 전년대비 비율을 줄여 사업비의 약 18%로 줄였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부분 기념품, 경품 등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바르게살기운동과천시협의회'4대 사회악 척결운동사업'은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범죄 근절을 위해 회원들이 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생과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성격과 홍보효과를 위해 급량비 및 홍보물제작비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 향후 시혜성 경비를 줄여나가고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자부담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

- 자유총연맹 어머니 봉사단 활동시 급량비 사용 비율 줄이기를 권고해 2016년 사업비 정산결과 급량비 사용비율은 40%에 해당합니다.(기획감사실)

- 문화원 행사의 경우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정한 규모로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단위로 체육대회를 직접 또는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토록 지원해야 합니다. 체육대회 개최 시 지원되는 보조금의 내역 중 식대/시상비/증정품/피복비 등은 시혜성 경비가 아닌 행사참가자들을 위한 필수 경비로 보아야 하며, 체육회는 수익 창출을 위한 단체가 아니므로 자부담의 비율이 낮아 보조금의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타지자체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문화체육과)

④ 급량비, 간식비 집행 기준 엄격 적용

급량비를 집행하는 경우,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7천원 이내로 하며, 급식 대상 인원에 대해 문서로 보고하여야 하나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체육회 행사의 경우 많게는 1백만원 이상의 급량비가 한번에 지출되나 신용카드전표 외의 증빙이 없습니다. 또한 간식비 등 지출의 경우에도 금액 기준에 따라 구입 물품에 대한 세부 명세와 물품검수 사진을 첨부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문화체육과)

- 보조금 정산 시 급량비 및 간식비 지출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⑤ 홍보비에 대한 기준 마련

민간행사보조의 경우 홍보비가 지나치게 과다 책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 홍보물, 홍보 책자 제작 등에 있어 필요한 수량을 예상하여 최소한으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홍보물 부착비용(과천문화원 등)까지 산정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시 대상 인원을 산정하고 이의 비율에 맞춰 홍보비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정산 시에는 계획 시 대상인원과 실제 사업 집행 시 대상인원에 대해서도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모든 단체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행사운영에 대한 사업 심의 시 책자발간, 도록제작 등 홍보물에 대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홈페이지 게시하여 최소의 사업비만을 계상하도록 조정·권고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 시민설명회에 예산편성 기준 단가 등을 시민, 사업담당 공무원에게 자료로 배포하였으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정산 검사 시 계획대비 사업실적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안내하겠으며, 이 결과는 성과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

- 홍보비가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문화체육과)

⑥ 관내업체 이용 권장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급량비 외에는 아직도 관외 업체 이용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 이용비율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거나 쿠폰이나 상품권을 발행해서 정산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기획감사실, 산업경제과)**

-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이용비율을 성과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

- 쿠폰이나 상품권을 발행하여 정산하는 것은 사업량에 비추어 볼 때 추가 상품권 발생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은 물론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산업경제과)

⑦ 주요 기관 임원의 수당 중복 수령 금지

과천시 출연기관이나 위탁기관의 임원인 특정인이 다수의 보조금에서 다양한 명목의 수당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기관의 임원이 보조금 지원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니 이러한 지원이 반복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총무과)**

- 특정위원이 다수위원회에 중복되어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는 점이 있어 2016. 7월 각종 위원회 중복참여를 지양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집행 및 정산 관리 미흡

소규모 단체의 경우 내부 결재 절차가 없어 품의서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재 서류나 장부의 작성은 사업의 규모나 단체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일정 금액 이상 거래의 경우 제조사와 정확한 제품 번호가 기재된 거래명세표(신용카드 사용의 경우에는 구입 품목 기재된 영수증)를 첨부하고, 칼라로 된 물품 검수사진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산 지침이 확실하지 않아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작성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 단체나 사업의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필요 서류가 미비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부 사업의 경우 담당자가 정산 지침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산 지침을 보완하고 보조금 담당자들에 대한 정산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천 연예예술인협회 트로트가요제(3천만원)의 경우, 1사업비 1통장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사전 승인 없이 주요 사업비의 집행을 변경하였으며, 주요 지출증빙에 대하여 입금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등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자부담 사용에 대해 통장 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첨부된 자부담 증빙은 보조금 교부 시 사업계획과 다릅니다. 그러나 정산 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의 경우, 그린스타트 공모사업의 사업기간 종료 후 미집행 잔액으로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시는 이러한 사업기간 종료 후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 집행 변경 시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지도하고, 자부담의 경우 보조금 통장에 입금하여 보조금과 비율대로 지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문화체육과)

-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승인 없이 예산을 변경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위한 속도계 사전구입 건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2016년 그린스타트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동일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4) 보조금 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첨부서류 보완 필요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1항에서는 보조금 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실적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실적보고는 회계보고 위주로만 되어있으나 보조금 목적에 맞게 사업을 잘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사진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기획감사실)**

-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시 보조금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 확인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자에 지도하도록 관련부서에 적극 전파하겠으며, 사업성과 평가 시 정산서와 함께 실적보고서의 제출서류 및 확인내용을 사업담당자가 명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 성과평가 미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에서는 사업 별로 사업의 성과와 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보조사업에 대해 2015년에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도 없습니다. 2015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결산검사일 현재 아직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민간보조금의 지급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집행되는 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성과평가를 한 후 향후 보조금 지원에 있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장 확인이나 성과 평가에 대한 문서화가 부족합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기획감사실)**

- 2015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40개사업 감축지원, 11개사업 지원중단 등 54개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적용하였으며, 2016년 성과평가시 구체적인 지표설정과 관련 사항의 증빙 확인 등으로 보조금 지원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6) 형평성, 비례성에 어긋난 부적절한 지원의 예

경기소리보존회의 경우, 단 하루의 공연에 한 벌 당 40만원하는 의상 30벌(120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또 다른 행사에서는 30만원하는 의상을 18벌(540만원) 지원하여 2015년에만 1740만원어치의 의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의상비 지원은 매년 반복되어왔습니다.

- 민주평통의 경우에는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백두산 기행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원되었으며, 이에는 회원의 배우자와 자녀도 동반하였습니다. 비록 회원 가족

들은 자부담을 하였지만, 사업의 취지에 맞는 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새마을회의 경우, 단체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 비용이나 회원 대상 교육비, 그리고 차량운영비가 민간행사사업보조 명목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새마을회의 경우 법정운영경비 이외에도 자체 임대수입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회원들 대상의 사업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경우, 단체 회원의 친목행사 성격의 사업(농촌일손 돕기)과 단체의 차량운영비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원되었습니다.
- 화훼협회의 화훼전시회의 경우 당초 5천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2억원(2014년 보조금은 1억원)으로 4배가 증가하면서 홍보물 제작비가 전기 5백만원에서 22백만원으로 전기 대비 430% 증가하는 등 일부 비용이 합리적 근거없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지원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과천문화원의'향토자료 수집 및 보존'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은 자료의 수집과 보존처리 등에 있으나 집행된 내용은 문구 구입, 청소 작업 수당, 어린이 대상 방학 특강, 인형극 답사비용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 예총 산하 예술단체 보조 사업의 목적은 관내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연극인협회와 무용협회의 경우 모든 출연진이나 연출 등 제작에 과천 관내 예술인이 거의 없습니다.(연극인협회 극본 1인만 관내 예술인, 무용협회 안무 1인만 관내 예술인)

⇒ **조치 결과 및 검토 (총무과, 산업경제과, 문화체육과)**

- 민주평통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은 2016년부터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배우자, 자녀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회 보조사업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새마을교육과 독서문화기행 워크샵 등은 새마을지도자 양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보조사업 진행시 자부담 비율을 높여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회 차량운영비 지원은 2017년 부터 자부담으로 처리)
- 바르게살기운동과천시협의회의 '자매도시 농촌 일손돕기'사업은 자매결연도시인 예산군의 농촌 일손 돕기와 자매도시간 지속적인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목행사 성격은 아니며, 차량운영비 지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소외계층에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총무과)

- 화훼전시회 정산 관련하여 2014년도는 인쇄물만 홍보물로 정산한 사항이며, 현수막 등의 홍보비용은 별도로 8백만원을 정산 처리하여 2014년도 홍보비용은 13백만원이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인쇄물, 현수막 등을 같이 홍보물로 정산하였으며 또한 신규로 가로등 배너를 제작하였던 관계로 홍보비가 증가되었습니다.(산업경제과)

- 2016년 경기소리보존회 공연 의상비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부담으로 집행(정기공연 시 자부담 1,000천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 과천문화원'향토사료 수집 및 보존'사업은 당초 향토사료조사, 사료관 운영, 체험교육프로그램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목적과 부합되게 집행하였습니다.
- 관내주민의 질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수준 높은 외부전문예술인들 영입이 필요합니다.(2017년 각 단체 관내회원은 20명 이상임)(문화체육과)

3. 민간위탁업체의 관리

(1)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에는 "지역의 주민/기업/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협의회가 "수립, 추진, 평가"하는 것과, 이의 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과 이의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을 그 기능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산 보고된 내용에는 숲길걷기, 자전거타기, 외래식물제거작업 등 단순한 일회성 행사 위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대한 조례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의회는 매년 위탁업무로 수행하던 사업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용역업무도 수주하였습니다. 아래 지적사항 뿐 아니라 협의회의 위탁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협의회의 자전거 활성화 사업은 그린스타트 공모사업에 민간단체들과 공모 경쟁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과천시장과 시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민간단체들과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여 사업자로 선정이 된 것이며, 이후 보조금 정산 내용에는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남은 보조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과정과 결과가 모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협의회는 2015년 6월 생태교란식물제거용역(17백만원 - 수의계약)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협의회 담당과인 환경위생과가 아니라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발주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협의회가 매년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외래식물제거 작업사업과 동일합니다. 민간위탁금 정산서류에는 2015년 6월 22일 업무 수행한 인원과 식대 사용내역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용역 보고서의 날짜와 인원이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3. 계약 관련 사항에도 지적하였듯, 협의회는 법적 형태도 맞지 않고 용역업무 수행실적도 없어서 절적한 계약심사과정을 거쳤다면 용역수행업체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환경위생과)**

-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과천의제21실천협의회)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의제 발굴을 통한 사업 추진과 평가, 교육 등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협의회와 협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린스타트 공모사업의 보조금 지원심의가 늦어져서 발생된 건으로 향후 공모에서는 절차 등의 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수행한“하천변 생태교란식물제거 용역”과 과천의제21의 연간 사업내용(외래식물 제거사업)과의 중복 여부에 대해 점검 확인 결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자원정화센터

인건비 중 홍보업무에 대한 사업내용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인원 2명의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원의 책정이나 인건비의 책정이 적정한 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는 정산비 항목으로 나열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정산비로

보아 정산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그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향후 계약 시에는 보완하기 바랍니다. 계약서 상 나열된 정산비 비정산비 항목과는 달리 실제 정산은 관행 상 기술직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정산비로, 관리직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비정산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환경위생과)

- 홍보업무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과천시자원정화센터(소각장)의 필요성과 친환경적인 소각처리 과정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의 이해 및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변화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 학생 및 시민, 외부인사 현장방문 시 쓰레기 소각처리 과정과 자원 재활용에 관한 설명 및 현장견학 등에 관한 홍보업무를 홍보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하여 홍보팀의 홍보기능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으로 인근에 주민 거주 시 소각장 관련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기 위해 주민홍보 활동 및 홍보업무 증가가 예상됩니다.
- 정산·비정산비 구분에 관해서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의거 구분 집행되고 있습니다.

(3) 민간위탁기관의 보조금 공모 참여 제한 필요

과천시 민간위탁기관인 (재)과천축제(8개 사업, 2.3억), 과천문화원(19개 사업, 1.7억), 경기소리보존회(6개 사업, 72백),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2개 사업, 8백) 등이 위탁사무 외에 다수의 보조금 사업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시에서 위탁하는 필수 사업에 해당한다면 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해야할 것이며, 위탁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받는 상근 인력의 인건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 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과천축제나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의 경우 과천시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 과천문화원의 경우에도 임원에 과천시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공모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가는 시점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민간단체들과 공모 경쟁을 한다는 것은 보조금 지원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선정과정에서도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 2016년 전통·향토문화 분야 공모사업은 다양한 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화나눔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공모하였으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 예술행사 보조금 사업은 2015년에는 지정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개정되어 한 단체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2017년 (재)과천축제 위탁사업은 2건(70,000천원)입니다.(문화체육과)

- 위탁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은 향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4. 계약 관련 사항

(1) 계약심사 대상 기관

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의무적 계약심사대상으로 시 출연기관(애향장학회, (재)과천축제, 청소년육성재단)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과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정에는 시 출연기관이 누락되어 있으며, 따라서 출연기관에 대한 계약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상위 예규에 맞게 개정하여야 하며, 향후 시 출연기관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기획감사실)**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맞게 "과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계약관리 업무 매뉴얼 개선

수의1인 견적 계약의 경우 계약관리팀에서 타견적서 제출이나 인터넷을 통한 가격검색 등 다양한 방법의 시장조사를 통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출증빙에 타견적서나 가격비교 검색 등에 대해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에 계약 체결

에 있어 우선권을 주는 경우, 관내업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약관리 업무의 매뉴얼을 개선하여 명확한 지침에 의해 계약관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회계과)**

- 2인이상 견적가격 및 인터넷 가격 조사 등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유사 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통합발주를 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각 과별로 연간 발주되어지는 물품이나 용역계약에 있어 통합 발주할 수 있는 계약들이 있는 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 환경미화원의 작업복 작업화 등 구입의 경우, 동일 업체에 연간 5번의 계약을 통해 나누어 발주가 되고 있으며 연간 계약금액은 4천만원에 달합니다. 연간 사용량을 예측하여 통합 발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회계과)**

- 연간발주계획을 취합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통합발주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 수의계약 시도 업체 적격 여부 심사해야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2015년 상반기에 생태교란식물 제거용역 17백만원을 수의계약하였으나 이 단체는 법인이 등록이 되지 않은 비영리단체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단체이고, 용역 수행의 실적도 전무하며, 단체의 재정능력도 확인되지 않는 비적격업체에 해당합니다. 수의 계약 시에도 계약상대자가 적격업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회계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나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따라 수의계약된 사항입니다.
-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계약 추진하겠습니다.

(5) 기준금액 이상 수의계약의 엄격 적용

기준 금액이상으로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사유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나, 다소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발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제4목 자호의 경우 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 자격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할 경우 한번 용역이나 물품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특정인의 경험이 필요한 경우로 간주하여 수의계약을 매번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안전재단에서 수행하는 어린이안전축제의 경우(35백만원)이나 이 조항을 적용하여 2010년 이후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해오고 있습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회계과)**

- 어린이 안전재단은 안전행사관련 사업추진의 노하우와 많은 경험을 갖춘 비영리단체로서 2012년부터 국민안전처, 전국 35개 시·군 등과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재단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제4목 자호 「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 자격이 필요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인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시 관련 법령을 엄격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 일상경비와 기금의 지출 관리

일상경비와 기금의 경우 회계과의 지출 관리에서 제외됩니다. 타부서와의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는 만큼 불합리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상경비와 기금의 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복사기 임차와 사무용품을 다루는 특정업체 A사(관내업체 아님)의 경우 연간 계약건수가 220건에 계약금액은 2.7억에 달합니다. 물품에 대한 단가를 비교 검토한 결과 일반업체에 비해 단가가 2배 가량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 홍보물 제작을 하는 특정업체 B사(관내업체임)의 경우 연간 계약건수가 217건에 계약금액은 1억에 달하며, 민간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으로 지출되는 건을 포함하면 그 건수와 금액은 크게 늘어납니다.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용역에 대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재난안전기금의 경우 TV, 핸드폰, 무전기, 망원경, 소화기 등을 구입했는데 해당 물품이 재난안전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지가 불명확합니다. 또한 각각의 전문용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아닌 모두 위의 특정업체 A사와 계약을 했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가격 비교 등을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조사와 정확한 품명이 기재된 거래명세서가 누락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물품검수 사진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 재난안전기금으로 구입한 재난교육 키오스크(28백만원 - 수의계약)의 경우, 지자체 중 과천시에서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이 된 후 단시간 내에 구입이 된 건으로,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계약을 실시할 때는 제품 자체의 성능에 대한 검증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뒤 구매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치 결과 및 검토 (안전총괄과, 회계과)**

-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1항 아목'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에 의거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경보기 구입, 재난발생시 안전사고 긴급대처를 위한 무전기, 망원경 등을 구입하였으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에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구입하였습니다.
- 다만, 예산절감을 위한 가격 비교 등 그 절차상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재난교육 키오스크 구입의 경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을 시간과 횟수에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일방적인 교육 방식이 아닌 가상현실을 이용한 게임기반의 체험형 안전교육방법으로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신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구입 계약은 재해안전교육시스템 개발 전문회사와 이루어졌으며, 지자체 중 과천시에서 선진적으로 구입하여 현재 타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컨텐츠 구성 및 성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수의계약 시 하자보증 부분을 포함하였고, 현재도 유지보수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안전총괄과)

- 복사기 임차는 기준금액을 정하여 계약되어 있으며, 사무용품은 부서운영비로 처리되는 건으로 가격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일상경비,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부서에 안내하겠습니다.(회계과)